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1나43188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창 담당변호사 이명근

피고,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 담당변호사 박성연, 조민정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14.

제1 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가소7079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과 연대하여 24,678,2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해서는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의 페인트 도,소매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5. 25.까지 E라는 상호의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C은 원고로부터 자동차용 페인트 및 부자재를 공급받았음에도 2012. 6. 8.자 기준 28,482,838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관련하여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3412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6. 19. 인용되어 2012. 7. 11. 확정되었다.

라. C은 2012.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이 28,482,838원임을 확인하고 2012.

9.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잔액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주었고, 피고(C의 배우자)가 위 잔액확인서에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다.

마.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2012. 9. 17.부터 2015. 4. 6.까지 합계 3,750,5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28,428,832원에서 이미 지급한 3,750,580원을 제외한 24,678,252원(= 28,428,832원 - 3,750,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보증인인데, 보증채권의 상사소멸시효 5년이 이미 완성되었다.

나.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므로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각각 별개로 정해진다. 그리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에 해당하는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상태에서 그 주채무를 보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증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163조 각 호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그 성질에 따라 보증인에 대한 채권이 민사채권인 경우에는 10년,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한편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행위에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상법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등 참조). 한편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상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인인 원고가 C에게 상품을 판매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보증을 받은 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상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를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2015. 4. 6.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이후인 2021. 3. 29.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보증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시효소멸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2012. 9. 15. C 및 피고와 잔액확인서(갑 2호증)를 작성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차3412호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 28,482,838원을 매월 3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따라서 그 최종 변제기는 2019. 10. 15.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9. 15.자 잔액확인서의 제3항에 “2012년 9월부터 매월 15일부로 삼십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 위

잔액확인서에 분할 변제 합의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위 제3항의 문언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월 삼십만 원 ‘이상’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서 매월 30만 원씩만 변제하는 것을 전제로 변제기를 연장하려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오히려 당시 원고는 확정된 지급명령을 확보한 상태로서 C의 책임재산에 대한 집행이 가능하였던바, 위 제3항은 C 및 피고에 대하여 매월 적어도 30만 원 이상씩은 성실하게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였다고 보이며, 위 잔액확인서 제5항에는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판단될시 잔액을 2,000만 원으로 삭감하되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아니할시 28,482,838원을 적용한다”고 기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잔액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 변제 합의에 따라 변제기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C이 발생시킨 매출금에서 5%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받기로 하였고, 2018. 5. 7.부터 2018. 8. 6.까지 합계 681,200원(2018. 5. 7. 183,078원, 2018. 6. 4. 175,540원, 2018. 7. 3. 148,997원, 2018. 8. 6. 173,58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주채무의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어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 일부를 2015. 4. 6. 최종 변제받아 그때까지 변제된 물품대금이 3,750,58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C 역시 이를 다투지 아니한 점, 원고가 제출한 C과의 거래내역(갑 제3호증)에도 2012. 1. 1.부터 2021. 1. 19.까지 거래기간 중 최종적으로 2015. 4. 6.자로 61,000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물품대금이 추가로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옥, 판사 홍순욱, 판사 이영훈